

<별첨 #01. 특별공급 안내문>

e편한세상 서울대입구
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

1. 공급개요 및 배정기준

■ 공급위치

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556-38번지 일원

■ 공급규모

공동주택(아파트) 지하3층, 지상10~20층 22개동 총 1,531세대 중 일반공급 65세대 및 부대시설

■ 일반 특별공급(기관추천) 주택형별 공급세대수

주택형	84A	84B	84C	84D	84E	114	소계
공급세대	6	31	8	13	7	0	65

※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공급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.

■ 대상자별 배정기준

대상자	배정기준	비고
국가유공자, 장애인, 중소기업근로자, 군인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	85㎡이하 주택건설량 10%범위	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

2.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

■ 대상자 자격

-특별공급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장 제4절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(16년 11월 24일 예정)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,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(부적격 당첨자 처리)

-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 제2호(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), 7호(의사상자 또는 그 유족), 8호(장기복무 제대군인,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, 장애인, 북한이탈주민, 납북피해자, 일본군위안부 피해자,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자, 중소기업 근로자,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등 대상자)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의 추천 또는 증명서 교부된 분

-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불가 (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. 단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)

■ 유의사항

-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, 신청자 및 그 세대원(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포함)이 각각 신청,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.(당첨자 명단관리, 계약체결 불가, 입주자 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)
- “무주택세대구성원”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(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)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.
 - 가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
 - 나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·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
 - 다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(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)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
 - 라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

-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,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,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.
- 본인이 특별공급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로 처리함.
-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.
-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,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. (신청자, 배우자,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)
-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,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, 계약 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.
-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. (단,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제1호, 제2호, 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함.)
-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·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(한 차례의 특별공급 간주),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.

3. 특별공급 일정 및 방법

■ 공급일정

신청일자	당첨자 발표	동호수 배정	계약체결	장소
2016.11.29(화) 10:00~ 14:00	2016.11.29(화) 17:00	2016.12.07(수)	2016.12.12(월) ~ 2016.12.14(수)	당사 견본주택

- ※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조하기 바람
- ※ 당첨자 선정시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, 특별공급 신청 및 계약체결은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야 함.
- ※ 당첨 동호수 확인 방법 :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(www.apt2you.com)

■ 당첨자 선정방법

- 청약경쟁률이 1: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
-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.
-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및 해당기관에서 확인서(추천서)를 발급 받은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,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견본주택에서 신청하여야 함.(장애인 기관추천일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포함)
- 미신청시 당첨자선정(동·호 배정) 및 계약 불가함

■ 당첨자 선정 유의사항

-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.
- 사업주체는 특별공급의 당첨자만을 선정하며, 동·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. (동·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)
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5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·호수 배정업무를 추천기관 (전산관리지정기관)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.
-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,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.
- 부적격세대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.
 ※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75조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1순위자의 경우에는 수도권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)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 거주자로 봄.

4. 특별공급 서류 및 견본주택 위치

■ 구비서류 안내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서류	○		특별공급신청서, 무주택서약서	본인	당사 견본주택에 비치, 무주택세대 구성원 입증서류(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,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)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, 본인서명 사실확인서	본인	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
	○		신분증	본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신분확인 가능한 신분증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
		○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.)
		○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 및 세대주 여부를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(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 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)
		○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본인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
	○	청약통장잔위(가입 확인서)	본인	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홈페이지(www.ap2you.com)에서 발급 철거주택 소유자,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, 장애인 제외(그 외 특별공급 대상자는 포함됨)	
일반 (기관추천) 특별공급	○		해당기관의 추천서(인정서)	본인	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, 해당 지자체장이 추천한 추천명단 또는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(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접수불가)만 인정함
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	○		인감증명서(청약자), 인감도장	청약자	용도 : 위임용
	○		위임장	청약자	견본주택 비치, 청약자 인감도장 또는 서명(본인서명사실 확인서상의 서명일 것)날인
	○		대리인 신분증, 도장	대리인	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

※ 상기 제 증명서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.

※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'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, 세대주 여부,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'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.

■ 견본주택 위치 및 기타 문의사항



홈페이지 : <http://www.daelim-apt.co.kr>

견본주택 :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-26번지(흑석역 2번출구)

문의전화 : 1877-900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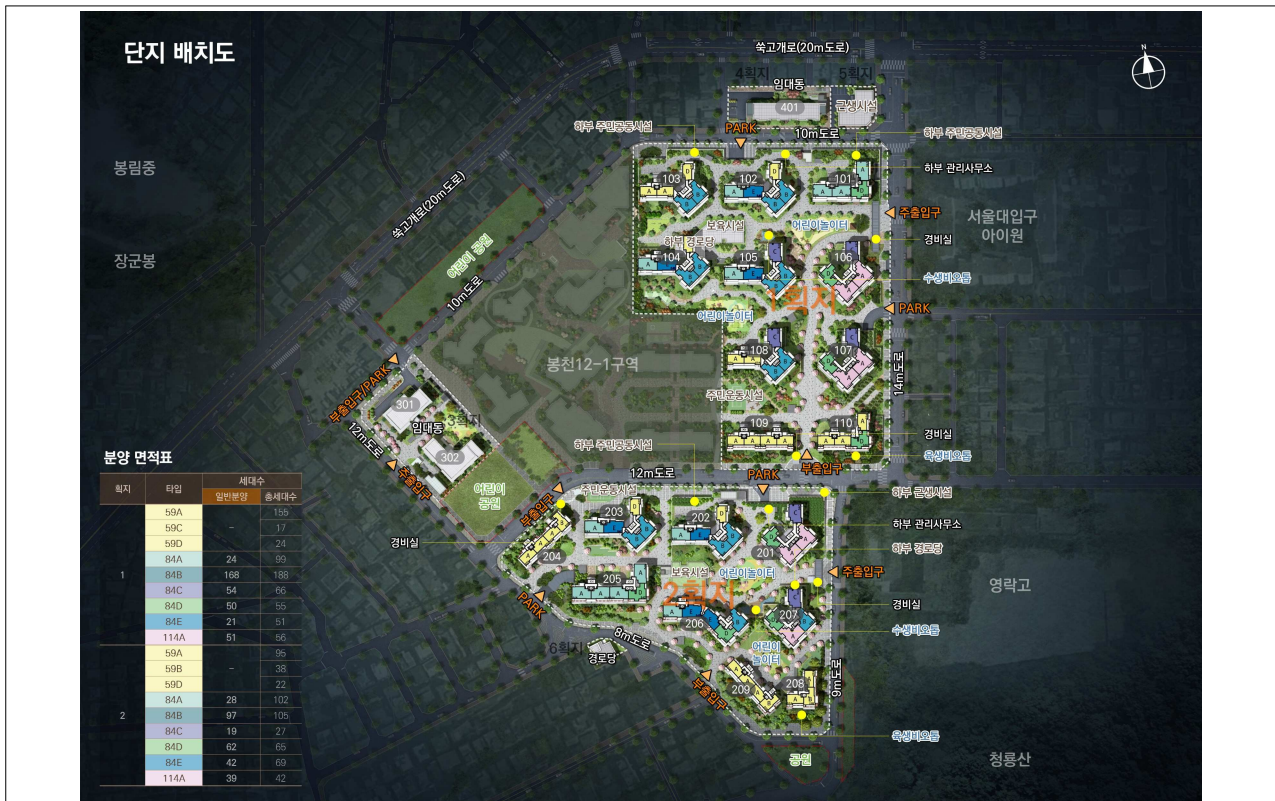
<별첨 #02. 참고자료>

■ 조감도



※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■ 단지배치도



※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